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75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	---

1.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신설 ...	3
---	---

I. 개요

1.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75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소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0. 28.
- (3) 회 부 일 : 2025. 10.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및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신설(이소영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104조의36) ○ 대상: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 * 첨단전략산업기금: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한 기금(「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21048호, 2025. 12. 10. 시행 예정)」 제29조의7부터 제29조의11까지) ○ 내용: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 적용기한: 2028. 12. 31.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소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59)

☐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이 2028년 말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 「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21048호, 2025. 12. 10. 시행 예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는 기금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 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¹⁾

1) 「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21048호, 2025. 12. 10. 시행 예정)」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①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2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 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3.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3.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5. 해당 기술이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자금의 대출, 채무의 보증 등의 방법으로 첨단
전략산업기업을 지원하고²⁾,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은 ①첨단

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3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21048호, 2025. 12. 10. 시행 예정)」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운용한다.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및 의결권 없는 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

사. 제2호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것(이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첨단전략산업기업의 거래상대방이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출

4.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관련 기술 확보에 필요한 기술 투자 등을 하는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위하여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부대비용

5.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6.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비용

③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②정부·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③자금지원을 받은 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④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⑤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 출연금, ⑥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임.³⁾

한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관리·운용하며,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함.⁴⁾

⑤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은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제3자와 함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을 조성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 ⑥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21048호, 2025. 12. 10. 시행 예정)」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라 한다)과 제2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5.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 출연금
6.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9조의9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 「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21048호, 2025. 12. 10. 시행 예정)」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운용한다.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참고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20년간 운용할 수 있고, 자금지원은 5년간 가능함.⁵⁾

□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보임.

첫째, 한국산업은행의 출연 부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자체 재원을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자금 지원, 저리 대출 등 적극적인 기금 운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제도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경우 주로 상환을 전제로 하는 국가보증채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대출 중심의 소극적 기금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어⁶⁾ 최근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둘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기간 종료 시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한국산업은행법」 부칙(법률 제21048호, 2025. 9. 9. 공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기간 등) ①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년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6)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의견

에 관한 권리·의무는 국가가 승계하고 한국산업은행은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⁷⁾

정부가 산업은행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손금산입 특례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법인세수가 감소하지만 종국적으로 해당 출연금은 국고로 환류되어 국가재정을 구성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빨라야 2025년 12월 초 출범 예정으로, 기금의 재원 조성 정도, 운용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거친 이후 조세특례 신설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유사 기금의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주체가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7) 「한국산업은행법」 부칙(법률 제21048호, 2025. 9. 9. 공포)

제2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기간 등) ①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년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 종료 당시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 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 기금 간 비교]

구분	첨단전략산업기금	기간산업안정기금	공급망안정화기금
근거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공급망안정화법
관리·운용 주체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목적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 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 하고 지속가능한 경쟁 력을 확보하며,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 용안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 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 보에 이바지
재원	●정부보증 기금채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정부보증 기금채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정부보증 기금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회수자금 ●기금 운용수익 등	●회수자금 ●기금 운용수익 등	●회수자금 ●기금 운용수익 등
	●한국산업은행 출연금 ●산은외 금융회사 출연금	-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주)} ●수은외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이외 출연금 및 기부금	-	-
재원조성 관련 조세특례	-	-	-
운용기간	2025년 12월 10일부터 20년간 운용할 수 있고, 자금지원은 5년간 가능	2025. 12. 31.까지(약 5년) 운용	2020년 5월~2025년 12월

주: 2025년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금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적극적
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상환의무가 없는 출연금을 통해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에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문 의 처

02)6788-5154